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 4차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고, 자료요청 및 조사 근거 신설 등〉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79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2217079)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의무 신설(안 제36조 제3항)	3
2. 고용노동부장관의 권고, 자료요청 및 조사 근거 신설 등(안 제39조 등)	8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221707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왕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26.
3. 회 부 일 : 2026. 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생활물류서비스 분야에서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 및 열악한 업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노동 관련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노동 및 안전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참여를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명시하는 한편 안전점검 결과보

고서 작성 및 대책 마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노동 및 안전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 36조, 제39조 및 제44조의2 등).

Ⅲ. 검토의견

1.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의무 신설(안 제 36조제3항)

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그 밖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정 인력 확보, 설비 마련 및 근무시간 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6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①·② (생략) <u><신설></u>	제36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그 밖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정 인력 확보, 설비 마련 및 근무시간 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

가. 검토의견

최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개정(법률 제21178호, 2026.6.3. 시행)으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를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

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들이 신설되었음.¹⁾

유사한 취지에서 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적정 인력 확보, 설비 마련 및 근무시간 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및 휴게시설 구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36조제3항이 이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1) ◇ 개정이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생략)

라. 생활물류서비스평가의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시간의 적정성을 추가함(제35조제2항제5호).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 등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제3호의3 및 제3호의4 신설).

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와 검사 권한을 강화함(제44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44조제2항).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의2 신설).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자에 대한 보고, 검사 근거를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안 제36조제3항에 대한 별도의 보고와 검사,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제36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
2. 생활물류시설 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행로, 차량접안시설 등의 공간 및 시설의 충분한 확보
3. 폭서, 폭한, 폭우 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의 마련
4.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리한 운행 유도 방지

②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4조(보고와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설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9., 2025. 12. 2.>

1.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근무시간 조정’, ‘적정 인력 확보’를 강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나. 이해관계자 의견

1)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의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송 중개형 플랫폼도 포함되나, 플랫폼 기반 중개형 사업자는 배송 인력에 대한 직접 고용 관계가 없고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실질적 통제 권한도 제한적이므로, 해당 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산업 구조와 부합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이행이 곤란함. 또한 종사자들은 동등한 지위에 있는 개인 사업자로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시간과 업무량을 선택하는 구조이나, ‘근무시간 조정’ 등의 대책 강구 의무는 독립된 사업자인 종사자의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의견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종사자 보호 등의 수준은 영업점과 택배기사의 계약 조건과 관련한 사안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직접 조치할 수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판단되며, ‘적정인력 확보’와 같이 모호한 표현은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고용노동부장관의 권고, 자료요청 및 조사 근거 신설 등(안 제39조 등)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선명령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자에 대해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략)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생략) <신설>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등록의 취소) ① ----- -----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39조제1항에----- -----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3호의4</u>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44조의2(합동안전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u>관계</u>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u><신 설></u>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3. (생략) 14. 정당한 사유 없이 <u>제39조에</u>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택배서비스사업자	<u>의 조치를 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u> <u>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제44조의2(합동안전점검) ① ----- ----- -----<u>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u>----- ----- -----. <u>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제51조(과태료) ① ----- ----- -----. 1. ~ 13. (현행과 같음) 14. -----<u>제39조제1항에</u> ----- -----

현행	개정안
15. (생략) ② (생략)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178호, 2026.6.3. 시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의 마련” 등을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대해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78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u>도모하기</u>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 3의2. (생략) <u><신설></u>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u>도모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권익보호를</u>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u>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의 마련</u>

<신 설> 4.5. (생 략) <신 설>	3의4. 제44조의2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 4.5.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합동안전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

개정안은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노동 및 안전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참여를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²⁾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가맹점사업자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³⁾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질문을 하고,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여⁴⁾ 해당 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3)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시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대상이 되는데,

개정안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개선명령 권고 및 자료제출 요청 권한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동일한 사업자가 유사한 의무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의견

현행법상 대등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간 실질적 지휘·감독권에 해당하는 권고 및 조사권을 규정한 사례는 없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자료제출요구, 실지조사가 가능하며 현행법에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조사 및 검토 등으로 인한 행정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임.

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1. 사업장

2. 제2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88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100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사무소

4.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

2)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의견

고용노동부가 동일 사안에 대해 추가로 개선명령(또는 조치 요구)을 할 수 있도록 하면, ①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중복 점검 ②이중 자료제출 요구로 인해 사업자의 행정 업무 및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행 기준이 부처별로 달라질 수 있어 현장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의견

개정안의 취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을 통해 규정된 사항이므로 이중규제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미 전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한 점검과 시정을 요구하고 있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0